**[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의2 및 이사회규정 제18조에 의한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성 및 권한**

제3조(권한)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에 규정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본 조 제2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신병, 해외여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여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심의 전에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특별한 이해관계가 확인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9조(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결의사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2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